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51 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고동진·주호영·김위상

성일종・박덕흠・강승규

박준태 · 김예지 · 배준영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.

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.

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4항 중 "3년"을 "10년"으로, "3천만원"을 "1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24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	4
호를 위반한 자는 <u>3년</u> 이하의	10 <u>년</u>
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	<u>1억원</u>
금에 처한다.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